

범죄 보도와 인권의 문제를 다시 생각한다

- 헌법재판소 2012헌마652 결정을 중심으로

표성수

변호사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필자가 범죄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문제를 직접 다루면서 범죄 혐의자의 인적 사항 공개 문제에 처음 접근한 것은 약 30년 전의 일이다.

언론사의 보도 중 범죄의 발생과 진행 과정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거나 언론의 경쟁적, 선정적 보도 행태로 인해 해당 당사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오래 전부터 세계 각국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범죄보도를 적절히 통제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 등을 계속해 왔다. 언론 윤리 연



구의 세계적 석학으로 불리는 끌로드 장 베르트랑(Claude-Jean Bertrand, 1934-2007)교수가 일찍이 언론평의회(press council), 뉴스 옴부즈맨(news ombudsman) 제도 등을 통한 개선을 강조한 후 영국, 독일 등 유럽 각국에서 이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영국의 경우 PCC(Press Complaints Commission), BBC의 불만처리위원회(Programmes Complaints Commission) 등 범죄 보도와 관련된 인권 침해 문제를 직접 다루는 기관들이 등장하였다.¹⁾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미 1970년대에 변호사협회, 시민단체들이 인권과 보도의 문제를 다루었고, 1980년대에는 「미디어와 인권을 생각하는 모임」(メディアと人権を考する会)이 전국 규모로 발족되어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였으며,²⁾ NHK,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 등 주요 언론들도 지나친 범죄 보도를 줄이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기초해 사건 보도에서 해당 혐의자의 인권 침해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³⁾

언론과 명예 등 인격권 침해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가치 지향에 따라 법리적 조화의 결론을 달리하는 미묘한 문제이기도 하다. 세계가 주목한 1964년의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 사건⁴⁾을 계기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헌법상의 문제가 법조계와 학계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킨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우리도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지난 30년간, 언론 보도와 관련된 헌법상의 원칙과 기준에 관해 법원과 학계가 고심에 찬 많은 해석론을 내놓으면서 두 가지의 중요한 가치, 즉 국민의 알 권리를 중핵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와 해당 당사자 개

인의 인격권의 조화를 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범죄 보도와 관련해서 보면, 우리의 경우 일본 형법 제230조의2 제2항에서와 같은 공소제기 전 범죄 행위가 공공성을 지닌 사안이라는 규정은 없으나, 범죄의 발생 사실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알려져야 할 공적인 사항이라는 점을 대체적으로 수긍하면서도, 혐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이나 그 사람에 관한 주변 사항들은 해당 당사자가 소위 공적인 인물(public figures)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적인 사항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가 대세를 이룬다.⁵⁾

이제 다시 헌법재판소의 2012헌마652 결정을 통하여 오늘날의 문제 상황을 정리해 본다.

우선 우리의 범죄 보도 실태를 보면 수많은 언론사에서 쏟아져 나오는 기사 중에 범죄 보도가 그 양이나 질에서 단연 다른 부문의 보도를 압도한다. 더구나 근래 보도 매체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보도의 기법이 진화하면서, 범죄와 관련된 보도도 단순한 사실 전달의 수준을 넘어 많은 패널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심층적으로 해당 당사자의 주변 상황이 파헤쳐지고, 범죄의 심리학적 동기 등이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분석되는 등

1) 김옥조, 2004, 「미디어 윤리」(커뮤니케이션북스), 48-51쪽.
 2) 薙野慎二 외, 1988, 『犯罪報道の現在』(日本評論社), 317쪽.
 3) 服部孝章, “無罪推定の社会化での報道機関の役割”, 『犯罪報道と人権』(現代書館) 163-168쪽.
 4) 미국, 연방대법원(1964. 3. 9.) 376 U.S. 254(1964), New York Times vs. Sullivan 사건.
 5) 표성수, 1997, 「언론과 명예훼손」(옥법사) 355쪽. 관련 판례는 대법원(1998. 7. 14.) 96다17257 판결, 대법원(2007. 7. 12.) 2006다65620 판결, 일본의 경우 최고재판소(1981. 4. 14) 民集 35,3,620 등 참조.

보도의 내용 또한 함께 진화하고 다양해졌다. 더구나 각종 자극적인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텔레비전, 인터넷 매체의 범죄 보도는 종래의 인쇄 매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중에게 전달되는 감정적 호소력과 파급력이 크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언론의 범죄 보도에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주목하는 한편, 이 원칙이 수시로 훼손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한다.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기까지 혐의자는 무죄로 추정되며 이는 사법절차와 기타 언론 등의 취재 절차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헌법상의 중요한 원칙이다. 따라서 범죄가 발생했다라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관한 신상 자료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 노출되어서는 안 되나, 실제 보도의 과정에서 일반인이 범죄의 혐의자로 지목되고 그 신상에 관한 자료가 공개됨으로 인해 헌법의 원칙이 훼손되는 경우가 없지 않다. 이로 인해 해당 인물이 입게 될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바와 같이 신상이 공개됨으로 인해 혐의자에게는 범죄인이라는 추정과 사회 윤리적 비난가능성까지 덧씌워지는 소위 낙인효과가 발생하고,⁶⁾ 이는 본인뿐 아니라 그 가족에까지 파급되는 등 피해를 확산시키며, 설령 당사자가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이러한 낙인효과를 흔적 없이 지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⁷⁾

다른 보도와 달리 언론의 범죄 보도는 대체적으로 두 중요한 기관의 정보 수집과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 정보 수령자인 국민들에게 전달된다. 처음 이 문제를 접함으로써 인권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기관은 범죄 정보를 수집한 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이고, 다음으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정보와 자료를 넘겨받은 후 기사화해 이를 매체를 통하여 전달하는 언론사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피청구인인 경찰관계자는 언론사들로 하여금 공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없는 해당 혐의자의 얼굴이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하도록 허용하였고, 이에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해당 언론사에 혐의자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요청함으로써 일부 언론사는 이를 모자이크 처리하여 방송한 것으로 현재는 사실관계를 적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해당인의 얼굴 영상은 희미하게 처리되어 보도된 것으로 여겨지나 우리는 그 결과보다 다른 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하여야 할 수사기관 스스로의 부적절한 행태를 우려하고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언론 브리핑이나 자료 배포는 더러 해당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헌법상의 무죄추정원칙을 훼손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다. 일반인이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과 함께 주변 사항 등을 자세히 브리핑하거나 해당 당사자에 대해서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본 사안에서의 두 가지 쟁점 중 헌법재판소는 혐의자의 얼굴을 전혀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 촬영을 허가한 부분만의 인격권 침해를 인정하는데 그쳤을 뿐, 「피의사실공표죄」에

6) 박용상, 2008, 『명예훼손법』 (현암사), 705쪽 이하에서는 혐의자에게 가해지는 이러한 부정적 효과를 '망신효과', '법에 의하지 아니한 사형(私刑)'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

7) 헌법재판소(2014. 3. 27.) 2012헌마652 결정

관해서는 2011년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 만큼 보충성을 결여하였다는 논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⁸⁾ 법리상 수궁할 수 있으나 수없이 행해지는 기소 전 범죄 사실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실공표죄」로 기소되거나 처벌된 사례는 전무할 정도로 사문화되어 있어 그 실효성이 의심되는 만큼,⁹⁾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개선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 범죄보도와 인권의 문제와 관련하여, 향후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일들을 다시 생각해 본다.

여러 가지 대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범죄보도로 인한 인권침해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근본적으로는 언론사, 관계기관, 학계가 한 자리에 모여 언론의 과도한 범죄 보도의 열기를 식히는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현재와 같이 보도 측면에서는 특종 경쟁, 사업 측면에서는 생존 경쟁이 수많은 언론사 간에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언론사는 자칫 심층보도라는 명목으로 지나친 신원노출이나 단정적인 표현, 범죄와 무관한 주변 상황을 파헤치는 식의 시청자 끌기의 유혹을 떨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해당 당사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또한 절실하다.

한편 이번 사안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사실공표나 인적 사항의 공개와 같은 헌법상의 무죄추정원칙을 위반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충분히 경종을 울리고 재발

방지에 힘을 모아야 한다. 물론 검찰이나 경찰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도와 인적 사항 공개에 관한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제정하여 시행해왔고 실무상으로도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 왔으나,¹⁰⁾ 실제 수사 현장과 언론에 대한 자료 제공의 과정에서는 사건 수사 결과의 홍보에 집착한 나머지 이러한 규정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현재의 결정은 이를 확인하고 인권의 최후 보루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에 족하다.

무죄추정원칙을 비롯한 모든 헌법 규정과 그 원칙은 주권의 원천이요, 헌법 제정권자인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며, 모든 권력의 주체인 국민들은 헌법과 관련 법규 수호의 의무를 국가기관에 위임하였다. 범죄보도와 관련해 언론기관 등이 이를 어기지 않도록 감시할 임무를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임무를 다하기는커녕 스스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임할 경우 인권을 침해당한 국민들은 언제까지나 이를 인내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 이들 기관에 위임한 권한을 축소하거나 회수하려 할지도 모른다. 관계 국가기관과 그 종사자들은 이 점을 깊이 자성하여야 한다. ─

8) 같은 취지, 헌법재판소(2011. 9. 29.) 2010헌바66 결정

9) 『헤럴드 경제』, 2014. 10. 13. 김재현, “『피의사실공표죄』는 사문화된 죄? 198건 고소·고발중 기소 0건”,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41013000032>(검색일: 2015. 8. 28.)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피의사실공표죄로 입건된 사건은 198건이었으나 기소된 사건은 전무하다.

10) 예컨대, 경찰청에서 시행 중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2008. 1. 15. 경찰청 훈령 제531호)을 들 수 있다.